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3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정을호·조정식·차지호

김영호·윤종균·고민정

임호선·이병진·김영배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제30조의10).

학교민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할청의 조직·인력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6조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을 제37조로 한다.

제34조의2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4장 제3절에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① “학교민원”이란 학생과 보호자 등이 고등 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2. 제20조에 따른 교육
 3.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 활동에 관련된 요구
 5.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해 관할청에는 통합민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보호자 등의 민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 처리의 지원 또는 해당 업무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0조의10</u>(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생략) <신 설> <신 설>	<u>제37조</u>(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현행 제30조의10과 같음) <u>제3절 학교민원 대응</u> <u>제35조</u>(학교민원의 정의) ① “학교민원”이란 학생과 보호자 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u> 2. <u>제20조에 따른 교육</u> 3. <u>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관련된 요구</u> 4. 「<u>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제2조제4호의 <u>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u> 5. <u>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u>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u>교육기본법</u>」 제13조제3항을

<신 설>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해 관할청에는 통합민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보호자 등의 민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처리

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 처리의 지원 또는 해
당 업무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